제2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로 보 고 서



2019. 8. 2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8월 28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19 - 57

나. 제 안 자: 정정희 의원 외 12명

다. 제안일자: 2019년 8월 14일

라. 회부일자: 2019년 8월 21일

2. 제정이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초등학생 돌봄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및 돌봄 서비스(안 제5조~제6조)

라. 돌봄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안 제7조~제8조)

마. 협의회 구성 등(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400,922천원)

다. 합 의: 생활보장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8. 14. ~ 8. 19.)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 있는 급식·간식 제공,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활동 지원과 맞춤형 상담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안 제1~2조] 초등학생 돌봄 지원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2)[안 제4조]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방과 후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3)[안 제5조]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 돌봄 시설 확충,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등

- 4)[안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 체험 활동 등 프로그램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5)[안 제7~8조] 돌봄 시설 설치 · 운영 및 위탁
 -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해당 시설 을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음
 -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6)[안 제9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 돌봄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돌봄협의회를 둘 수 있음 7)[안 제10조] 돌봄협의회 구성 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함
 - 아동청소년 업무 과장, 가족정책업무 과장, 교육정책 업무 과장을 당연직으로 함
 - 간시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함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임.
- 최근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초등학생들이 방과 전·후 마음 놓고 안전하 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는 추세임

- 2019년 7월 기준 강서구 인구수는 595,057명이며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 36 개교의 재학생 수는 27,000여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초등학교 오후돌봄 교실 121개소의 이용자수는 2,700여명이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아동 순으로 이용 가능하며, 강서구에서 운영 중인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주 이용자임.
- 일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에 비해 돌봄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가적인 돌봄 시설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참고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워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